

제 2장 운영방침

제1조.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

1. 이용정원은 9명.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자 또는 인지 지원 등급자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에 있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블로그 또는 시설 게시판, 인터넷 및 지인들의 소개, 전화상담, 관할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도록 한다.

제2조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기간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나.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.

2. 계약 목적

- 가. 시설과 이용자 간 계약에 의하며 시설은 이용자에게 신체활동, 간호재활서비스 및 일상생활편의 등을 제공하며, 그 가족의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가. 매년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표(주간보호센터 게시판에 부착)와 같이 한다.

나. 병원이용에 따른 **병원비용 및 비 급여 항목**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가. 권리

- ①.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.
- ②.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.
- ③.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.
- ④.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.
- ⑤.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.

나. 의무

- ①.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.
- ②.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.
- ③.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.
- ④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.
- ⑤.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.
- ⑥.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.

5. 계약자 또는 보호자,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

가.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가)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
②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③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나). 이용자의 의무

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

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
⑥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다). 보호자의 의무

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
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의무

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④이민,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6. 계약의 해제

가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(임종징후) 사망하였을 때

② 이용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③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

막대한 지장을 줄 때
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⑦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이나 퇴소를 요구할 때
-